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스타방문요양센터

1. 성희롱 및 성폭력 이란

가. 성희롱

성희롱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한다

나. 성폭력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다. 성폭력의 유형

구분	행위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이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희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도 기타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

라. 성폭력의 규정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교육

어떤 것이 성폭력일까요?



성폭력(Sexual violenc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폭력의 범위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함

6

[관련 규정(노인에 대한 성폭력 등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에 의하여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호)

[법적 성립 요건]

- ①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 ②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
- ③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2. 예방 및 대처방안

가. 올바른 이해

- 1)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 이다.
- 2)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근친, 친인척, 애인,데이트 상대, 선후배, 직장상사, 동료, 이웃사람.
- 3) 남자 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4) 성폭력 범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발생된다.

나.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침 (직원 : 수급자)

-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 ⑥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 한다.
-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 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 한다.
-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 하여서는 안 된다.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3. 성폭력 대처방안

○ 기관의 대처 방법

-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유형1 또는 유형2)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 성희롱을 한 수급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개인의 대처방안

-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성폭력 피해신고 ☎1899-3075,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으로 사과한다.

-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정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권리구제 및 성희롱 피해 상담 연락처

- ☎ 033-811-228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 ☎ 1331 국가인권위원회
- ☎ 1366 여성가족부 여성 긴급전화
- ☎ 112 경찰 고발
- ☎ 1350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